

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

개정 2018.03.22., 개정 2019.12.23. 개정 2020.05.20. 개정 2021.1.29.(대학평의위원회)
개정 2022.03.04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31조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(이하 “평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, 제4호,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.

- ①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- ②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③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④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⑦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장 조 직

제3조 (구성 및 자격)

- ① 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1.01.29.>
 1. 교원 - 3명
 2. 직원 - 2명
 3. 조교 - 1명
 4. 학생 - 2명
 5. 동문 - 1명
 6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- 2명
-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소속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며, 조교도 소속 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.<개정 2021.01.29.>
-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.

- ④ 각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

제4조 (위촉)

- ①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전체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- ②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전체직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 중에서 전체 조교회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<신설 2021.01.29.>
- ④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<항 이동 ③→④ 2021.01.29.>
- ⑤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<항 이동 ④→⑤ 2021.01.29.>
- ⑥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총장이 위촉한다.<항 이동 ⑤→⑥ 2021.01.29.>
- ⑦ 교원평의원은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 1인당 1명씩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여 득표수에 따라 상위 3명을 추천한다.<개정 2021.01.29.>
- ⑧ 직원평의원은 전체직원회의에서 직원 1인당 1명씩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여 득표수에 따라 상위 2명을 추천한다.<항 이동 ⑦→⑧ 2021.01.29.>
- ⑨ 교원 및 직원 평의원 선출 시 같은 수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 본교 재직경력(임용일 기준) 우선자로 한다.<항 이동 ⑧→⑨ 2021.01.29.>

제5조 (임원)

-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-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-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-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6조 (임기)

-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(학년도 기준)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,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,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7조 (자격상실)

- ①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분변

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연수, 휴직, 해외파견 등으로 6개월 이상 평의원의 임무를 하지 못 할 경우
 2. 교직원 징계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- ② 학생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자격을 상실한다.
1. 휴학, 교환학생, 해외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평의원의 임무를 하지 못 할 경우
 2. 학생 징계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
제3장 회 의

제8조 (회의)

-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한다.
-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 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 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3.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- ③ 회의개최는 회의에 대한 주요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.
<신설 2018.03.22.>

제9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.

제10조 (회의록)

-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참석자 서명을 하고 간서명은 회의에서 호선된 3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2.23.>
- ③ 회의록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다만, 회의록 내용중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<신설 2018.03.22.>

제11조 (출석 및 자료제출)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

한다.

제12조 (비밀유지)

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 (예산)

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 (간사)

-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- 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20.05.20., 2022.03.04.>
-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제4장 개방이사 추천위원회

제15조 (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)

- ① 의장은 법인정관 제20조의 5에 의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) 위원의 추천을 의뢰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- ③ 추천위원회는 정관 제20조의 5에 따라 동일법인 내 설치학교와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제5장 보 칙

제16조 (규정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17조 (내규)

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제18조 (준용)

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.

부 칙(2007.12.0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7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03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2.2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간서명은 제10조 제②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0.05.2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1.29.대학평의원회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